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내규

2020년 2월 신설; 2022.8.24.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한 요건과 대학원학칙 제5장(자격시험) 제22조(종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적용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2장 학위 취득 요건

제3조 (석사학위 취득요건)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중 수강한 교과목들이 이수학점 및 (존재할 경우) 필수과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소속학과 과목(구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구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학과 포함)을 4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3. 컴퓨터공학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컴퓨터공학과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4조 (박사학위 취득요건)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이수학점 및 (존재할 경우) 필수과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소속학과 과목(구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구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학과 포함)을 6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3.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반드시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하고, 청구논문 심사에서 제시된 논문 발전계획을 충실히 실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중간심사를 통과하고, 반드시 최종논문심사를 갖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5. 본인의 연구 결과를 전공 관련 국제학술대회 또는 국제학술지에 한 편 이상 게재/발표(졸업사정 시점 게재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석박사통합학위 취득요건)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통합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석박사통합학위에 해당하는 이수학점 및 (존재할 경우) 필수과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소속학과 과목(구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구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학과 포함)을 10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3.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반드시 석박사통합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하고, 청구논문 심사에서 제시된 논문 발전계획을 충실히 실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중간심사를 통과하고, 반드시 최종논문심사를 갖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5. 본인의 연구 결과를 전공 관련 국제학술대회 또는 국제학술지에 한 편 이상 게재/발표(졸업사정 시점 게재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활동)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 활동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 승인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연구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7조 (보칙)

제3장 종합시험

제8조 (시험과목)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 **석박사통합과정은 6과목**으로 한다. 이 과목들은 모두 소속학과 과목(구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구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학과** 과목 포함)이어야 한다. 본인 지도교수로부터 수강한 과목은 2과목 이하로 제한한다.

제9조 (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종합시험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험위원) 제10조에서 응시신청을 받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과 학과주임교수가 시험위원이 되어 출제내용, 유형 등을 협의한다.

제12조 (출제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13조 (합격인정 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시기는 3월과 9월로 한다.

제15조 (시험결과관리) 학과주임교수는 종합시험의 최종 결과를 매학기 초 3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종합시험면제) 대학원학칙 제22조 5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이 이를 충족할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7조 (준용) 본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이 내규의 제3장(종합시험)은 2020년 3월 종합시험 대상자부터 적용하되, 2020년 3월 이전 입학생 중 기존 소프트웨어학과 또는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와 내규에 따라 과목을 이수하여 위의 요건을 따를 수 없는 경우 기존 규정을 따른다.
- ③(시행일) 박사학위 취득요건 제4조 5항은 요건은 2020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④(경과조치) 이 내규의 제3장(종합시험) 제8조(시험과목)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의 종합시험 응시과목 수는 2023년 3월 종합시험 대상자부터 적용한다.